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자료**

http://www.motie.go.kr

2016년 12월 1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보도자료 배포시)

배포일자	2016. 11. 30. (수) 15:10분				
담당과장	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관세청	세계무역기구과장 관세협력과장 세원심사과장	박성진(044-203-5630) 진승하(044-215-4450) 민희(042-481-7640)	담당자	이채원 사무관(044-203-5632) 최영훈 사무관(044-215-4453) 정윤성 사무관(042-481-7643)

834개 정보기술제품 관세 인하 [16.12.1일부터]

- WTO 정보기술협정(ITA) 확대 발효 -

□ **정보기술협정(ITA,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) 확대** 이행을 위한 「**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**(대통령령)」이 **개정**됨에 따라, **'16.12.1일부터 해당품목**에 대한 **관세가 인하될 예정임**

□ **ITA확대**는 **기술발전**과 **신제품의 등장**으로 기존 **정보기술협정***('96년)을 보완하기 위해 **'12.5월부터 미·중·EU·일** 등 53개국이 **협상**을 시작하여 '15.12월 제10차 **WTO각료회의**를 계기로 최종 타결되었음

* '96년 타결된 ITA는 컴퓨터, 휴대폰, 반도체 등 정보기술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철폐(우리나라, 미, 일, 중, EU 등 82개국 참여중)

□ 이번 **ITA 확대 이행**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**반도체 제조장비, IT 소재**(디스플레이용 필름·접착제 등), 현미경·렌즈 등 **광학·영상기기**, 심전계·MRI 등 **의료기기** 등 **총 834개**(HSK 2016, 10단위 기준)임

○ 총 834개 품목중 **381개 품목(전체 46%)은** '16.12.1일부터 **즉시 관세가 철폐**되며, **365개 품목은 3년간, 기타 품목**은 **5년** 또는 **7년간 단계적**으로 관세가 철폐*됨

* 관세철폐 기간별 비중: 즉시철폐(45%), 3년(44%), 5년(5%), 7년(6%)

○ 우리나라는 **회계연도**를 **기준**으로 **매년 초**에 **단계별**로 관세가 **인하**됨에 따라, **'17.1.1**에 다시 **관세**가 **인하될 예정임**

[적용례]
①LCD제조용 도포·현상기(현행 8%, 3년 철폐)
1년차 : 6%(시행일~) → 2년차 : 4%('17.1.1) → 3년차 : 2%('18.1.1) → **4년차 : 0%('19.1.1)**
②자기공명 촬영기기(현행 8%, 5년 철폐)
1년차 : 6.7%(시행일~) → 2년차 : 5.3%('17.1.1) → 3년차 : 4.0%('18.1.1)
→ 4년차 : 2.7%('19.1.1) → 5년차 : 1.3%('20.1.1) → **6년차 : 0%('21.1.1)**

□ ITA 확대이행으로 **영상·통신 기기** 및 **부품** 등 **우리 수출시장 확대**가 **기대**되며, **IT 장비·소재 및 부품 등** 수입품목 관세인하에 따라 **국산제품의 가격 경쟁력**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

○ 또한, **헤드폰, MP3**(음성재생기기) 등 **일반 수입 소비제품들의 가격도 인하되어 소비자**들의 **후생**도 **증가**될 것으로 예상됨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□ 해당품목 수입업체는 WTO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**일반 FTA**와는 달리 **원산지증명서** 등 **별도의 제출 서류없이 WTO 양허관세**를 **적용**받을 수 있음

○ 자세한 **통관절차** 또는 **품목별 관세율**은 관세법령 정보포털(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lip/index.do) 또는 전국세관 수입통관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

※ 붙임 1: ITA 확대 대상품목 철폐유형별 현황 및 참여국 현황
붙임 2: ITA 확대 대상품목 수입신고 요령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이채원 사무관(☎044-203-563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12-01 13:42:44

참고 1 ITA 확대 대상품목 철폐유형별 현황 및 참여국 현황

□ 총 834개 품목 : 관세철폐 유형별 현황

구 분	주 요 품 목 (%)은 현재 적용되는 관세율
즉시철폐 (381개)	인쇄제판용 필름(6.5%), 잉크젯방식인쇄기(8%), 자동급지기(8%), 열식 복사기(8%), 반도체 제조용 사출성형기(8%), 장중단파 수신기(8%) OLED제조용 건식 식각기(5%), 반도체 디바이스 삽입·제거기계(8%) 음성재생용 레이저디스크(8%), 축음기용 레코드판(8%) 등
3년 철폐 (365개)	인쇄용 잉크(6.5%), 전자식 저울(8%), 플라즈마 클리너 머신(8%), 화폐교환기(8%), LCD제조용 도포·현상기(8%), 음향증폭세트(8%), 음성녹음 재생기기(MP3) (8%), 프리즘(8%), 영사용스크린(8%), 현미경(8%), 초음파 영상진단기(8%), 컴퓨터 단층촬영기기(8%), 온도계(8%), 사진측량기기(8%) 등
5년 철폐 (40개)	자기공명촬영기기(8%), 심전계(8%), 기타의료기기(8%), 뼈(골)밀도 측정기(8%), 면적계(8%), 초음파 어군탐지기(8%), 초음파 두께 측정기(8%) 등
7년 철폐 (48개)	PC용 팬(8%), 정지형변환기(8%), 가청주파증폭기(8%), 헤드폰(8%), 무선원격조절기기(8%), 개폐기(8%), 위성방송 수신기기 부분품(8%) 적산용 계기(8%), 검정용 계기(8%) 등

□ 참여국 현황(53개국) * 이행국(44개국)

○ 한국, 미국, 중국, EU(28)·대표부, 일본, 호주, 스위스, 리히텐슈타인, 캐나다, 노르웨이, 모리셔스, 뉴질랜드, 싱가폴, 대만, 태국, 말레이시아, 필리핀, 홍콩, 코스타리카, 이스라엘, 몬테네그로, 아이슬란드, 과테말라, 콜롬비아, 알바니아

참고 2 ITA 확대 대상품목 수입신고 요령

□ 관세율 구분부호 : CIT*

* 「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」 제2조 별표 1의 다

○ (원칙) ITA 확대 대상품목은 관세율 "CIT"가 기본세율 및 WTO 일반양허세율(C*)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CIT 적용

* 「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」 제2조 별표1의 가

- HSK 10단위內 세부표기인 Bar(-) 별로 CIT 관세율이 2개 이상인 경우 신고인이 품명과 ITA 협정 양허내용을 확인 후 CIT 관세율 中 선택

〔관세율 적용 사례〕

품목번호	품명	관세율 구분부호	세율
HSK 8701.90-1000	초음파 어군탐지기	C	8.0%
	- 센서	CIT	6.0%
	- 기타		6.7%

* WTO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초음파 어군탐지기 센서는 CIT 6% , 기타는 CIT 6.7%

try of Tra
try and Energy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12-01 13:42:44